

2024 사회적경제 상담매뉴얼(사례집)

# 상담사례로 배워보는 사회적경제기업 설립과 운영



2024 사회적경제 상담매뉴얼(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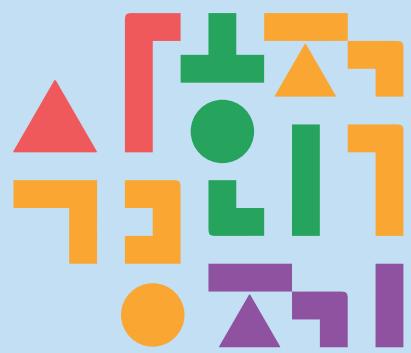
사회적경제기업 설립과 운영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OUL SOCIAL ECONOMY CENTER





# 목차

## 1 들어가기

- 발간사 ..... 6
- 센터소개 ..... 8

## 2 사회적경제 살펴보기1

- 사회적경제 이해 ..... 14
- 사회적경제조직 유형 ..... 17
-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 18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 ..... 19



## 3 사회적경제 살펴보기2

- 사회적경제 FAQ ..... 31
- 상담사례 ..... 67

## 4 부록

- 지원제도 ..... 93
- 지원기관 소개 ..... 103
- 관련법 등 ..... 104



# 1

## 들어가기



발간사	.....	6
센터소개	.....	8



“기업을 기업답게,  
협동을 넘어 상생으로”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입니다.

우리는 혁신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을 목표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  
습니다.

이번 '사회적경제 상담매뉴얼(사례집)'은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고민과, 운영 중 겪게 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상담사  
례집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더욱 공정하고, 친숙하게 시민들에  
게 다가가길 기대합니다.

상담사례집을 발간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상담사례집 제작위원회를 이끌며 전체적인 방향과 초석을 다듬어주신 제작위원장 주식회사 힐러넷 홍현표 대표님, 구성·편집부터 상담사례 정리, 법률 자문까지 분야별 전문가로서 의견을 주신 제작위원 사단법인 지방시대연구소 강영환 이사장님, 김용호법률사무소 김용호 변호사님, 서울청년센터 성동 서주석 센터장님, 광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이종혁 교수님, 그리고 검수와 발간 실무를 맡아주신 이정민 선임매니저님과 이은정 매니저님을 포함한 우리 센터의 모든 구성원, 기회를 만들어주신 서울시 공직자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센터는 앞으로도 공정한 기회 제공과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과 상생 가치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2024년 12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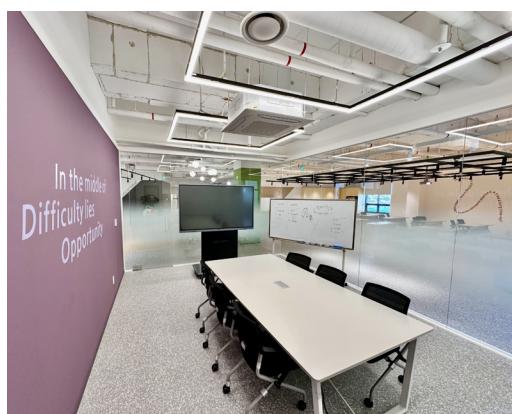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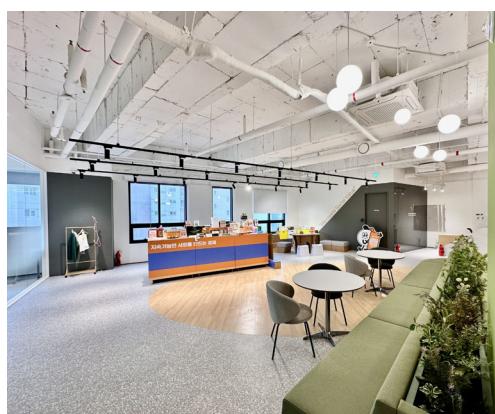
## 센터소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 시민의 삶이 더 다채롭고 풍성해지도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1월 23일 설치되고, 4월 11일에 설립된 민관 거버넌스 기관입니다.

서울시와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사회적경제로의 정책 통합 및 지속가능한 기반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현장 및 민간 지원 조직들의 허브,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센터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가 설립하고 미담장학회와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탁컨소시엄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시와 민간의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서울 지역 곳곳을, 사람과 사람을, 사람과 일자리를, 사회적경제조직과 자본을 연결하는 열린 플랫폼이자 사회적경제조직들의 협동화를 촉진하는 네트워크 허브로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 비전

서울시의 공정·상생경제 실현 및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성장·판로지원, 인재양성 및 홍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



### 목표

혁신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경제의 경쟁력 제고 및 상생의 가치를 확산하는 생태계 활성화



#### 효율적인 센터, 효과적인 사업

- ①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
- ②전문가를 통한 역량 개선
- ③중복 유사 사업 방지
- ④투명한 사업 집행



#### 기업다운 사회적기업 육성

- ①기업가 정신과 창의성 함양
- ②우수기업 엑셀러레이팅 시스템
- ③판로인프라 확대 및 사업개발 지원강화
- ④다각적 자금 활로 개척



#### 산학협력 기반의 연결고리 강화

- ①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다각적인 의견 수렴
- ②대학의 교육, 연구 인프라 활용



#### ESG가 실현되는 서울

- ①ESG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구조 개선
- ②임팩트 투자와 사회적 금융 활성화



#### 소통하는 사회적경제

- ①광역 자치구 센터의 연계 및 소통 강화
- ②시민들의 센터 공간 오픈 (교육, 강연, 쉼터로 리모델링)
- ③이용자 친화적 홈페이지 리뉴얼

## 상담지원



**1533-5051**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및 운영 상담**

평일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주말·공휴일 제외)



**센터 내방 상담**

상담문의 > 일정 협의 > 예약 확정 > 방문상담 진행

\*예약 없이 방문하거나 방문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운영 관련 법무, 법률, 세무·회계 등 해당 분야 전문가의 1대1 맞춤상담**

**전문가 진단**

▶ **문제 파악**

▶ **해결방안 제시**

전화 상담 후 심층상담 필요 시 연계

## 일러두기

본 사례집의 상담사례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상담전화에 접수된 상담사례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본 사례집에 수록된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 기업별 운영 전반을 고려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2

## 사회적경제 살펴보기 1

### 사회적경제 이해

사회적경제의 정의와 동향	14
사회적경제 특징과 효과	15

### 사회적경제조직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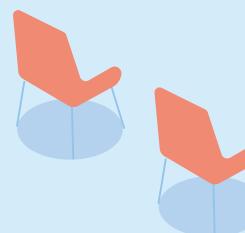
사회적경제조직 유형	17
------------	----

###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18
----------------	----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

법인형태와 종류(영리/비영리)	19
설립절차	20



## 사회적경제 정의와 동향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는 국가별, 시대별로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사회적경제'로 통용되고 있으나 최근 유엔(UN),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협동조합 연합(ICA)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사회연대경제'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닌 상호성, 민주성, 연대성을 기반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체성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란 구성원간 협력,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 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17.10)

**사회연대경제(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는 자발적 협동, 상부상조, 민주적이고 참여적 지배구조, 자율과 독립성, 잉여/이윤 및 자산의 배분과 사용에서 자본보다 사람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에 둔다는 원칙들에 바탕을 두고, 집합적이면서 일반적 이해에 복무하는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조직 및 다른 형태의 조직체를 포함한다.(ILO 결의안 5조)

## 사회적경제 특징과 효과

### 사회적경제 특징

#### 자율·민주

경제적 효율성보다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1인 1표 민주적 의사 결정을 통한 자율 경영을 통해 운영

#### 사회통합

영리 추구보다 구성원 간 이익 공유,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 사회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

#### 연대·협력

시민들이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 공동체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

#### 경쟁·보완

일반 영리기업과 경쟁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으로 기능

\* 출처: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사회적경제 특징, 주요역할

## 사회적경제 효과

### 사회적 측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계층간 빈부격차를 완화



보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복지서비스 수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촉진하여 구성원 간의 신뢰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공동체 문화를 생성

### 경제적 측면



일반법인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높으며,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 및 불공정거래 개선에 기여하며 높은 기업 생존율을 유지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통해 소득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제활동 참여 인력을 확대

## 사회적경제 조직 유형

# 사회적경제조직 유형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2022.12.) 기준)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 마을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마을기업

###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자활노동사업단(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기타(비영리민간단체 등)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 출처: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사회적경제 특징, 주요역할

##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유형	구분	전체	서울시
	일반협동조합	21,509	3,451
	사회적협동조합	5,734	963
<b>협동조합<sup>1)</sup></b>	일반협동조합연합회	103	38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31	8
	이종협동조합연합회	13	-
	예비 사회적기업	975	245
<b>사회적기업<sup>2)</sup></b>	인증 사회적기업	3,762	593
<b>마을기업<sup>3)</sup></b>		1,800	79
<b>자활기업<sup>4)</sup></b>		954	142

- 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누리집 COOP 협동조합 현황(24년 12월 기준)
- 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포털 사회적기업 주요현황(24년 12월 기준)
- 3) 행정안전부 전국 마을기업 현황 자료(24년 6월 기준)
- 4)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기업 현황(24년 12월 기준)

## 법인형태와 종류 (영리/비영리)

구분	조직형태	예시	사업목적	운영방식
	주식회사	(주)OO전자 등		1주 1표
	유한회사	세무법인 등		1좌 1표
	유한책임회사	사모투자펀드 등		이윤
	합명회사	법무법인 등		극대화
<b>영리법인</b>	합자회사, 합자조합	투자회사		1인 1표
	농업(어업) 회사 법인	농업회사법인 (주)OO		1주 1표
	영농(영어) 조합 법인	OO영농조합법인		
<b>협동조합</b>	일반	일반협동조합		조합원 실익증진
	사회적	의료협동조합		1인 1표
<b>비영리법인</b>	사단법인	(사)OO		
	재단법인	(재)OO나눔재단	공익	이사회
	사회복지법인	OO사회복지법인		이사회

# 설립절차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1 발기인 모집 (3개 이상 협동조합)	 1 발기인 모집 (3개 이상 사회적협동조합)	 1 발기인 모집 (5개 이상 조합)
▽  2 정관 작성	▽  2 정관 작성	▽  2 정관 작성
▽  3 설립등의 협동조합 모집	▽  3 설립등의 사회적협동조합 모집	▽  3 설립등의 조합 모집
▽  4 창립총회	▽  4 창립총회	▽  4 창립총회
▽  5 설립신고 (기획재정부장관)	▽  5 설립인가 신청 (기획재정부장관)	▽  5 설립인가 신청 (기획재정부장관)
▽  6 회장에게 사무 인계	▽  6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인가여부 결정	▽  6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인가여부 결정
▽  7 출자금 납입	▽  7 회장에게 사무 인계	▽  7 회장에게 사무 인계
▽  8 설립등기	▽  8 출자금 납입	▽  8 출자금 납입
▽  9 설립등기		▽  9 설립등기

## 사회적협동조합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유산청 (구.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법무부	농촌진흥청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2024년 기준 총 31개 중앙부처 서류접수 진행 중

\*부처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 필수

### 신청서류 접수처

### 신청방법

제출서류 취합 후 등기우편 발송

\* 등기우편 발송 후 도착 알림을 받은 경우 1~2일 경과 후 담당자 수취 여부 확인 필수

\* 설립인가 신청 서류 방문 접수 불가

### 신청유형선택

중앙부처 홈페이지 내 정책 등 사업 추진 내용 파악하여 조합의 목적 사업내용과 가장 많이 연관된 부처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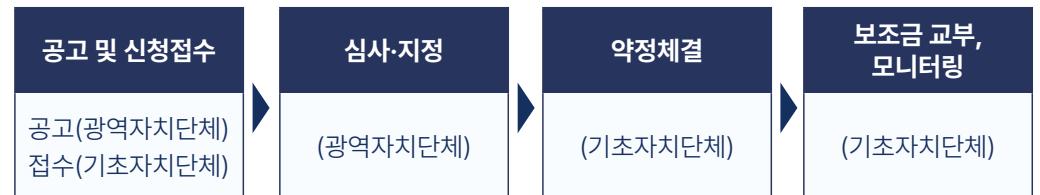
## 사회적기업

1. 인증 계획 공고 고용노동부 주관
2. 상담 및 안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센터) 주관
3. 인증 신청 및 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본원) 주관
4.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 수립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센터) 주관
5. 현장 실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센터) 주관
6.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본원) -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7. 검토 보고자료 제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본원, 센터) - 고용노동부
8. 인증 심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주관
9. 인증 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 인증서 전산 발급(20.3월~)

## 마을기업

### 예비 마을기업

- (신청 자격) 마을 또는 단체(5인 이상 참여하는 비(非)법인 공동체) 등도 가능
  - 단,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해야 함
- (지정 기준) 마을기업 지정 요건을 참고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별 심사·지정 추진
- (지정 기간) 약정 체결한 날부터 2년
  - ※ 자치단체별 재심사·지정으로 연장 가능



### 마을기업 (1~3회차)

- (대상) 의무교육 이수 및 지정요건 충족한 1~3회차(신규·재지정·고도화) 신청을 요청한 마을기업

- (지정 절차)



### Tip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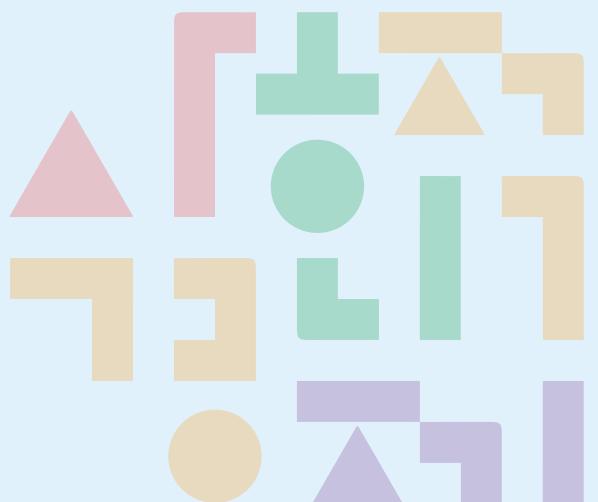
1.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광역자치단체·관할부처
2. 신청 및 접수 광역자치단체·관할부처
3. 심사 및 선정 광역자치단체·관할부처
4.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광역자치단체·관할부처

설립요건

운영유형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조직형태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사업운영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수행한 사업과 동일성 유지
교육이수	자활기업 창업 구성원의 1/2 이상 창업 실무교육 이수, 자활기업 대표자 또는 관리자 연 1회 보수교육 이수 필수
지원요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하며, 수급자는 반드시 1/5 이상

인정절차

-  01  
자활기업 인정 신청  
(지역자활센터)
-  02  
설립요건 충족여부  
검토·승인(자치구)
-  03  
자활기업 관리, 육성 지원  
(지역자활센터)



# 3

## 사회적경제 살펴보기2

### 사회적경제 FAQ

협동조합	32
사회적기업	43
마을기업	59

### 상담사례

협동조합	67
사회적기업	79
마을기업	85



## 협동조합

- 사례1**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사례2** 발기인, 설립등의자, 조합원이란 무엇인가요?
- 사례3** 총회와 이사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사례4** 정관, 규약, 규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사례5** 의사록 공증이란 무엇인가요?
- 사례6** 대의원 총회란 무엇인가요?
- 사례7** 협동조합 경영공시 대상은 누구인가요?
- 사례8** 협동조합 설립신고는 어디서 해야 하나요?
- 사례9** 출자금 최저, 최고 금액 등 제한이 있나요?
- 사례10** 휴면협동조합 해산간주제란 무엇인가요?

## 사회적기업

- 사례1**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사례2**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과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 사례3**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사례4** 사회적기업은 주식회사만 신청할 수 있나요?
- 사례5** 취약계층이란 무엇인가요?
- 사례6** 사회서비스의 범위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사례7**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이란 무엇인가요?

## 마을기업

- 사례1** 마을기업과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사례2** 마을기업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사례3** 청년 마을기업이란 무엇인가요?
- 사례4** 다른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 사례5** 마을기업 연합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협동조합

### 사례1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가진 사업조직입니다. 다만 협동조합은 사업의 목적이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있는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넘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사업의 40% 이상을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됩니다. 한편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협동조합은 행정기관(시·도지사)에 신고로 설립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관계부처(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b>법인격</b>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b>설립</b>	• 시도지사 신고	•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b>사업</b>	•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수행 가능	• 금융 및 보험금을 제외한 모든 사업 수행 가능 •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에 따른 주(主) 사업 40%이상 수행 의무
<b>경영공시</b>	• 의무사항 아님 * 조합원수 200인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의 경우 의무	• 의무사항 *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b>법정적립금</b>	• 잉여금의 10/100 이상 *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 잉여금의 30/100 이상 *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b>배당</b>	• 배당가능	• 배당금지
<b>청산</b>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 · 국고 등 귀속
<b>감독</b>	• 직권 또는 신고에 따른 조사, 시정명령	• 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관계부처)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 • 인가요건 위반시 인가 취소

## 사례2

### 발기인, 설립동의자, 조합원이란 무엇인가요?

발기인이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로 법인설립의 발기행위에 참여하여 설립업무 일체를 추진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설립동의자란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조합원이란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발기인과 설립동의자 모두 협동조합 설립이 되면 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 사례3

### 총회와 이사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총회는 법률상의 협동조합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총회 결정사항에 의거해서 업무를 집행하는 주요기관입니다.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일 경우,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총회 의결사항과 이사회 의결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총회 의결사항	이사회 의결사항
①정관의 변경	①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규약의 제정 · 변경 또는 폐지	②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③임원의 선출과 해임	③규정의 제정 · 변경 및 폐지
④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④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⑤결산보고서의 승인	⑤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⑥감사보고서의 승인	⑥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⑦협동조합의 합병 · 분할 · 해산 · 휴업 또는 계속	⑦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⑧조합원의 제명	
⑨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⑩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⑪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⑫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례4

#### 정관, 규약, 규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정관은 협동조합 최고의 자치 법규로 15가지 필수 기재 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규약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협동조합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총회 결의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규정은 정관, 규약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정관, 규약보다 하위의 자치규범입니다.

##### 정관의 필수 기재 사항 15가지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총회 ·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구분	정관	규약	규정
의결	총회 (과반수 출석,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총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이사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내용	목적, 명칭, 조직운영, 사업, 조합원 등 협동조합기본법 제86조 제1항 필수기재사항	총회 운영, 배당 등 정관 이외에 조직, 사업에 필요한 사항	이사회 운영, 직원보수 등 정관, 규약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효력 발생시점	설립(변경)신고일	총회 의결일	이사회 의결일

##### 정관, 규약, 규정 문서의 보관

- 정관: 발기인이 날인한 최초 정관이 제일 중요. 원본 보관 필수  
개정 시, 개정 신·구대조표에 총회 기명날인인이 날인하여 원본에 붙여서 보관  
개정 전문은 출력하여 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공개  
※ 개정 전문에 다시 발기인 등이 날인할 필요는 없음
- 규약: 제정 또는 개정된 규약 문서에 총회 기명날인인이 날인하여 보관
- 규정: 제정 또는 개정된 규정 문서에 이사회 참석 이사가 날인하여 보관

## 사례5

### 의사록 공증이란 무엇인가요?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등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 협동조합의 창립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었으며, 창립총회 의사록대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공증인이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공증할 수도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위임을 받아 청문인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공증료와 함께 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증을 의뢰한 사람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사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증합니다. 공증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기본 서류	1. 진술서, 확인서, 위임장, 조합원 명부
	2. 임시총회 공고
	3. 의사록 2부
	4. 정관
추가 서류	해당 의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증사무소에 사전 문의

## 사례7

### 협동조합 경영공시 대상은 누구인가요?

조합원 수 200인 이상 또는 직전 사업연도 사업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억 이상인 협동조합과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은 경영공시 대상입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의2(경영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례6

### 대의원총회란 무엇인가요?

대의원총회란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총회에 갈음하여 협동조합의 의사 를 결정하는 기관으로 조합원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총회 대의원 정수는 조합원 총수의 10% 이상이며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으며 대의원의 임기, 선출방법 및 자격 등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해두어야 합니다. 협동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사항이므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할 수 없습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2조(협동조합 등의 경영공시)** ① 법 제49조의2(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1.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
2.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

## 사례8

### 협동조합 설립신고는 어디서 해야 하나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협동조합을 담당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조례로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에게 설립신고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조례로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에게 설립신고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 업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② 시장은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도지사가 의회사무처장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경기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제3항 별표 3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0.10.1.>  
③ 도지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10.1.>  
④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명령·감독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사례9

### 출자금 최저, 최고 금액 등 제한이 있나요?

출자금이란 조합원이 조합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출연하는 행위로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입니다.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며 최저, 최고 출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예외적으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설립인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설립동의자"라 한다)가 5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 가운데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구성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7.>  
1.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個所)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일 것. 다만, 시(인구 10만명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군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300인 이상으로 한다.  
2.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 출자금이 5만원 이상일 것. 다만, 제25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인당 최고 출자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총액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다만, 시(인구 10만명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군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개설하려는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마다 제2항 각 호의 요건(제2항 각 호 중 “설립동의자”는 “조합원”으로 본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해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 사례10

### 휴면협동조합 해산간주제란 무엇인가요?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난 협동조합을 휴면협동조합으로 간주합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관할 법원에 휴면 협동조합에게 사업을 폐지하지 않았음을 신고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하며 법원에서 협동조합에 ‘최후 등기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계속 영업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협동조합은 해산 간주됩니다. 해산간주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청산종결로 간주되며 법원행정처장 직권으로 청산종결 등기하게 됩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휴면협동조합의 해산)** ①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내용·방법 등은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에 이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되고,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협동조합은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협동조합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이 그 후 3년 이내에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⑤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이 제4항에 따라 협동조합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⑥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에 관해서는 「상업등기법」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제2항으로,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제5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3. 31.]

### 휴면 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 간주 절차



\* 법원행정처장의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협동조합이 계속 등기할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사례1

###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기업입니다.

인증 사회적기업이란 인증 신청 기업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증 요건과 특성 및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게 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연중 상시 접수제로 운영되며 심사는 신청 현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개최합니다.

구분	사회적기업(인증)	예비 사회적기업(지정)
근거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등
주관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지방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장 지정
요건	①조직 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③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①조직 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②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③사회적 목적 실현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④ - ⑤ - ⑥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신청	상시 접수	연중 일정 공고

## 사례2

###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과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부처형과 지역형은 지정 심사를 주관하는 기관에 따라 구분됩니다. '부처형'은 중앙부처에서 주관하고, '지역형'은 지자체에서 주관합니다.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습니다. 심사일정 등을 이유로 중복하여 공고된 경우 먼저 공고된 지정만 효력이 있으며 같은 날 지정이 된 경우 지정받은 기업이 신청 취소 공문을 발송하여 해소하여야 합니다. 부처형과 지역형의 지원혜택은 해당 공고 시 지원범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사업 범위, 활동영역 등을 고려하여 기업에 적합한 지정 유형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사례3

###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입니다. 소셜벤처 기업은 소셜벤처기업 지원에도 운영요령에 따라 소셜벤처기업 판별 결과 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4

##### 사회적기업은 주식회사만 신청할 수 있나요?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개인사업자는 불가). 사회적기업 신청 가능한 기업 유형 분류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1. 「민법」에 따른 법인 ·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 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말한다. <개정 2012. 6. 5., 2012. 8. 3.>

1.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전문개정 2010. 12. 9.]

#####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 조직형태(예시)

- 사단법인, 재단법인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일반법 및 개별법에 따른 모든 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포함)
-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 사례5

### 취약계층이란 무엇인가요?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의미합니다. 취약계층 판단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60% 이하인 자

#####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 소득: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 가구 월평균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

- 소득금액증명(원)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것으로 판단하되, 소득금액증명 외에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별 확인 기준 근로소득: 수입금액(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 소득금액(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액)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 소득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b>‘23년</b>					
<b>3/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b>	2,782,902	4,601,181	6,559,520	7,956,449	8,895,998
<b>60%</b>	1,669,741	2,760,708	3,935,712	4,773,869	5,337,598

**제2호(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 기관 등의 확인서

#### 제5호(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경력단절여성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참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확인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협조요청 하여 대상자 확인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 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 부모 가족 증명서(음/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조회 결과 취득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 확인서, 통·빈장의 확인서 등)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보호종료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 34세 이하인 자

▶ **확인방법:** 보호종료확인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보건복지부  
에서 자립수당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시 발급 중)

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퇴소한 자 <  
신설>

▶ **확인방법:** 청소년쉼터 등 입소기간 확인서 등

- 해당시설의 합산 보호기간 1년 이상인 가정 밖 청소년

\*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  
인근로자, 금융채무 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학교폭  
력 피해자,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을 포함하여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8.7.17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  
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  
로 인정 가능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관련 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금융채무 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 여부를 판단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채용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저소득'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저소득자'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 일반근로자로 '18.5.1 고용된 자가 '18.7.15 고령자가 된 경우  
'18.7.15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사례6****사회서비스의 범위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회서비스의 범위는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업종코드 또는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의 주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아래 표준 산업분류표 상 업종코드와 일치하는지 판단합니다.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보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호 (보호), 교육 서비스 • 예시: 집단 보육시설 등	08721	보육시설 운영업
주관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 • 예시: 의료(병원, 의원 등)	Q Q86 08610 08630 0869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 보건업 병원 공중 보건 의료업 기타 보건업
사회복지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 예시: 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087 Q871 08711 Q8712 08713 0872	사회복지 서비스업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심신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환경	고형 혹은 비고형의 각종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 환경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 • 예시: 폐기물 처리업, 하수 폐수 처리업	E E370 E3701 E3702 E381 E3811 E3812 E3813 E382 E3821 E3822 E3823 E3824 E383 E3831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활동, 환경 정화 및 복원 복원업 (37~39)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하수 및 폐수 처리업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업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폐기물 처리업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지정 폐기물 처리업 건설 폐기물 처리업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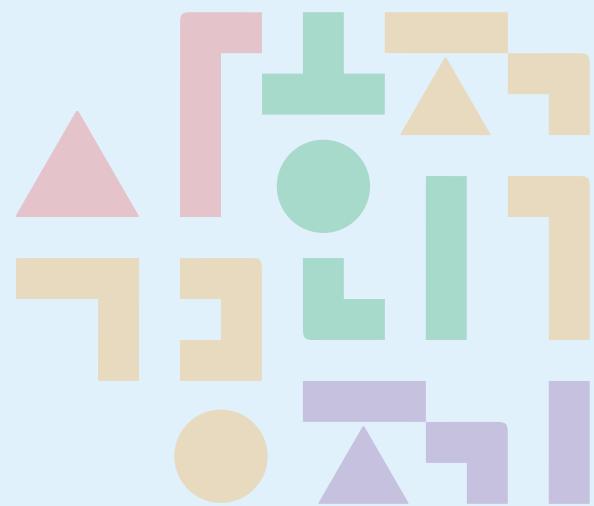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E3832	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문화·예술 ·관광 및 운동 서비스	문화·예술 활동과 레저·관광 및 운동 등과 같이 삶의 질 증진에 관련한 서비스 • 예시: 여행보조서비스,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공연단체	N752 N7521 N7529 R R90 R901 R9011 R9012 R9013 9019 R902 R9021 R9022 R9023 R9029 R91 R911 R9111 R9112 R9113 R9119 R912 R9121 R9122 R9123 R9129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자영 예술가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 활동 • 예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N N74 N7410 N742 N7421 N7422 N7430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고용 서비스 등 사업지원 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 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 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 는 산업활동 · 예시: 사업지원서비스(인 력공급 및 고용알선)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 N7511 고용 알선업 N7512 인력 공급업 N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탐정업은 적용 제외) N753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N7532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N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N7599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산업활동 · 예시: 개인 간병인, 이·미 용, 욕탕, 마사지 등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10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S9611 이용 및 미용업 S9612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관련 서비스업 S96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91 세탁업 S969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 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 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예시: 가사·산모·육아도우 미 등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T97 가구 내 고용활동 T9700 가구 내 고용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 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T981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T982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 산, 발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 · 단, 산림을 보전하는 내용 의 서비스 사업만을 사회 서비스 영역으로 인정	A02 임업 A020 임업 A0201 영림업 A0202 벌목업 A0203 임산물 채취업 A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
	기타	
	육성위원회 검토를 통해 사 회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인 정받는 활동	

사례7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이란 무엇인가요?
	사회적 가치 측정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이 창출한 사회적·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사회적가치지표(SVI)는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 3가지 관점에 따라 1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측정내용과 측정지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점	주요 측정내용
사회적 성과	조직이 사회적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종 기제를 설정하고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 · 사회적 미션의 관리, 주사업활동의 사회적 성과,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노력,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조직 운영의 민주성, 근로자 지향성 등
경제적 성과	조직이 효율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나타난 사업활동의 경제적인 결과를 측정 · 고용창출 및 재정성과, 노동성과 등
혁신 성과	기업활동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성이 제대로 발현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 · 기업활동의 혁신성

관점	범주	영역	측정지표	배점
사회적 성과 (60)	사업 활동	사회적 미션	1.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2
			2.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 여부	5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비계량 지표)	15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4. 사회적 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5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5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비계량 지표)	10
		사회적 목적 재투자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5
		8. 근로자 임금수준	8	
		조직 운영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5
		고용창출 및 재정성과	10. 고용성과	10
			11. 매출성과	10
			12. 영업성과	5
		재정 성과	13. 노동 생산성	5
혁신 성과 (10)	기업 혁신	기업 활동의 혁신성	14. 혁신 노력도 (비계량 지표)	10
			합계	14개 지표 100

\* 출처: 2024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 마을기업

## 사례1

### 마을기업과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의미합니다. 마을기업 신청 접수 및 심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진행되며 최종 심사 및 지정은 행정안전부에서 그 결과를 기초자치단체로 통보합니다. 한편, 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만들어진 다양한 시설을 유지 관리하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민중심의 사회적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는 국토교통부로 신청합니다.

## 사례2

### 마을기업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 보조금 등의 사업비 지원, 교육, 경영 컨설팅, 판로, 네트워크 구축 등의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아래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비 지원

- (보조금 규모) 최대 3회, 1억원(1회차 5천만원, 2회차 3천만원, 3회차 2천만원)
- (자부담) 보조금의 20% 이상(청년마을기업·인구감소지역은 10% 이상, 중복혜택 없음)

#### - 맞춤형 육성 지원(행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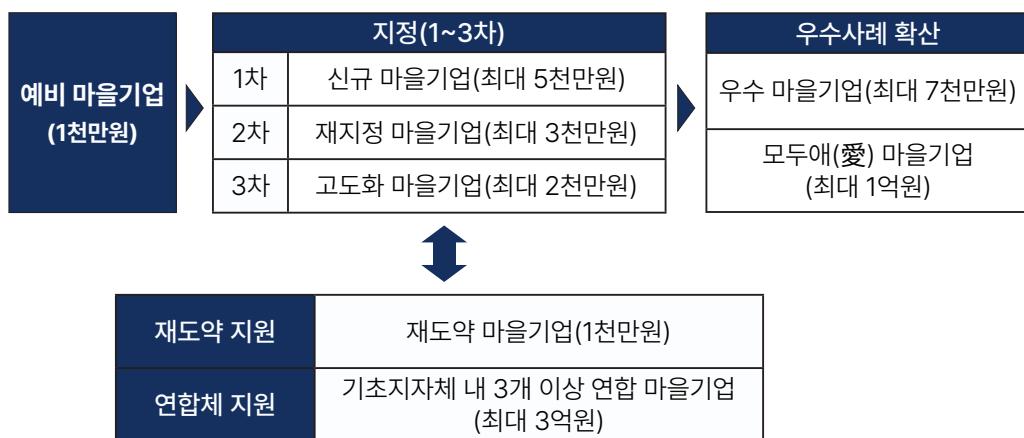
- 재도약 마을기업, 우수·모두애(愛), 마을기업 연합사업 선정 및 지원 등을 통해 기업 여건에 맞는 지속적인 성장·운영을 위한 컨설팅, 사업비 등 지원

#### - 자립 지원(행안부, 자치단체, 지원기관)

- (교육) 마을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이해를 돋고 마을기업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실시
- (경영 컨설팅) 마을기업 유형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
- (판로 지원) 마을기업의 안정적 매출 확보를 위한 판로 확대 지원 (유통업체 입점 지원, 판촉 행사, 유통·마케팅 컨설팅 등)
- (네트워크 구축) 마을기업간 또는 사회적경제 분야 등과의 협업 지원

※ 연도별 예산, 여건 등에 따라 지원 내용(지정, 지원금 등)이 변경되거나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 마을기업 성장단계별 지정·지원 체계



### 사례3

#### 청년 마을기업이란 무엇인가요?

청년들이 주도하여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으로 지역주민 5인 이상을 포함하고, 지역주민비율(50% 이상)과 청년회원비율(30%~5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청년 마을기업이 회원 수 증가, 시간 경과 등으로 인해 청년회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마을기업의 지정요건(지역주민비율 읍면동 기준 70% 이상)을 충족하여야 마을기업을 유지할 수 있으며,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규정위반에 따른 시정지시 후 지정취소 될 수 있습니다. 회원(출자자) 수에 따라 청년마을기업 지정 요건 예시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회원(출자자) 수에 따른 청년마을기업 지정요건

- 회원(출자자) 5인 → 지역주민 5인 이상 & 청년 3인 이상
- 회원(출자자) 6인 → 지역주민 5인 이상 & 청년 3인 이상
- 회원(출자자) 10인 → 지역주민 5인 이상 & 청년 5인 이상

\*청년회원비율은 기초자치단체의 청년인구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30~50%)

#### 기초자치단체의 청년인구비율에 따른 청년회원비율 기준

총 인구의 청년인구비율(20%) 초과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청년회원비율 50% 적용, 미달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인구비율별 차등 완화

기초자치단체 청년인구비율*	15% 미만	15%~20% 이하	20% 초과
청년회원비율	30%	40%	50%

\* 산정 기준 :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말일(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jumin. mois.go.kr 참고) 예) '25년 신청 시, '24.12.31. 기준 적용

#### 사례4

#### 다른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지정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기존 보조 사업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보조금 사용의 목적 및 용도 등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상에 중복되는 인건비 편성 등이 없는지 검토한 뒤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5

#### 마을기업 연합사업이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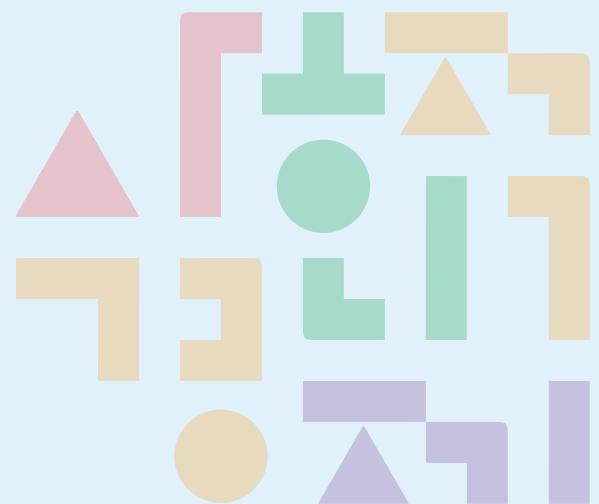
마을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증진을 위하여 동일 지역 내 3개 이상 마을기업이 참여한 연합체에게 제품 개발, 기반 설비 확충, 홍보, 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비와 홍보 및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절차와 신청유형 예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추진절차



\* 신청유형(예시) - 자체적인 유형을 발굴하여 신청 가능

유형	내용(예시)
판로확보	농·수·축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
교육	돌봄+교육+진로·체험
예술	예술기획+공연+문화탐방
복지	장애인 돌봄+일자리+주거



## 협동조합

- 사례1** 협동조합 설립신고/등기 시 주사무소 소재지를 자택/개인사무실/마을공용공간 등으로 해도 되나요?
- 사례2** 공공기관의 임원이나 직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 사례3**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사례4** 협동조합에 모든 조합원이 없게 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사례5** 이사회나 총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해도 되나요?
- 사례6** 비등기이사의 경우 이사회의 성원 및 의결정족수에 포함이 되나요?  
또한, 비등기이사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 사례7** 조합 운영이 어려운데 탈퇴하는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돌려달라고  
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가입신청서상에 아예 출자금 반환을 금지  
한다는 조항을 넣어도 될까요? 이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분할환급/  
환급유예 등의 조건을 걸어도 되는지요?
- 사례8** 정관 상 임원수는 5명인데 총회에서 7명을 선출했습니다. 이 경우  
7명 모두 임원신고/등기 해도 되나요?
- 사례9** 이사장A(자연인)와 이사B(법인) 직무수행자가 동일인이어도 되나요?
- 사례10** 조합 가입 시 100만원을 출자했는데 별도 출자증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조합에서 출자금의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므로 반환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례11** 조합원이 탈퇴 시 본인의 지분을 조합에 전액(또는 일부) 기부하겠  
다고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 사례12** 일반협동조합 탈퇴 시 출자금은 회계연도 마감 후 3개월 내 반환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비 반환은 10일  
내라고 하는데 일반협동조합 출자금과 다른 건가요?
- 사례13** 법인인 조합원이 폐업(해산)한 경우 출자금 반환은 어떻게 해야 하  
나요?
- 사례14**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  
나요?
- 사례15** 협동조합 해산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해산하지 않  
고 계속 운영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례16**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일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사례17** 조합원 외의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나요?

**사례18** 사회적협동조합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례19** 임원이 연임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 변경등기를 해야하나요?

**사례20** 설립신고 이후 등기하지 못했습니다. 해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회적기업

**사례1** 개인사업자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나요?

**사례2**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례3** 사회적기업 인증 후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변경한다면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사례4** 사회적기업 유자가 어려워 인증을 반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사례5**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뒤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 마을기업

**사례1** 예비 마을기업은 법인만 신청할 수 있나요?

**사례2**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도 마을기업이 될 수 있나요?

**사례3** 예비 마을기업에도 지자체 우선구매 등과 같은 마을기업 지정 시  
부여되는 혜택이 있나요?

**사례4** 마을기업 지정 후 주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례5** 마을기업 지정 후 법인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협동조합

## 사례1

## 협동조합 설립신고/등기 시 주사무소 소재지를 자택/개인사무실/마을공용공간 등으로 해도 되나요?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주된 사무소의 요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된 사무소를 자택이나 개인사무실 또는 마을공용공간 등으로 정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시 주된 사무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확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제조업, 인쇄업 등 공간 요건이 있다면 그에 맞는 공간으로 확보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된 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에 사전 확인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 사례2

## 공공기관의 임원이나 직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공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영리활동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상근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협동조합의 비상근 임원 및 일반 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은 가능하며, 비상근 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협동조합의 임원으로 활동해왔다면, 이는 징계 사유에 해당되며, 단순 조합원으로 활동한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私企業體)의 이사 ·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 지배인 ·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1. 7. 4.]

**제26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 12. 11.>

[전문개정 2011. 7. 4.]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례3

####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는 조합원 5인 미만이 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해산의 사유가 되거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저발기인수 부족으로 인한 1인 출자한도 30%를 초과하거나 구성원 변경에 따른 임원 변경사항을 신고·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되어 조합원 수가 최저 발기인 수 미만으로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실제 활동하지 않는 협동조합으로 간주되어 시·도지사의 시정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조합원 5인 미만인 상황이 발생하면 빠른 시일 내 조합원을 충원하여 5인 이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제70조의2(감독)** 시 · 도지사는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협동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조합원 수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저 발기인 수 미만으로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 제28조에 따른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 제45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사례4

#### 협동조합에 모든 조합원이 없게 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법 제14조는 법에 규정한 사항 외는 상법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협동조합에 조합원이 없게 된 경우는 해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례5

### 이사회나 총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해도 되나요?

「협동조합 기본법」상 총회 및 이사회는 대면 총회만 가능합니다. 서면 및 전자적 방식 총회는 불가합니다. 대면총회를 통해 의결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6

### 비등기이사의 경우 이사회의 성원 및 의결정족수에 포함이 되나요? 또한, 비등 기이사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비등기이사는 법적으로는 이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이사가 사고나 궐위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비등기이사가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이사회 구성원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정관에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를 구분하되, 다만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이사회에서의 의결권)를 동등하게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의결정족수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비등기이사가 정관에서 정한 권한을 넘어서는 대외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을 수는 없으며 나아가 이사로서의 대외적인 법적인 책임 역시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사례7

### 조합 운영이 어려운데 탈퇴하는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돌려달라고 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가입신청서상에 아예 출자금 반환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넣어도 될까요? 이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분할환급/환급유예 등의 조건을 걸어도 되는지요?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에 조합원의 탈퇴(제명 포함) 시 출자금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이를 협동조합의 정관에 어떻게 규정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출자금은 협동조합의 자기 자본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협동조합 운영이 잘 될 경우, 출자금의 지분 가치는 증가하고, 반대인 경우는 감소하며, 경우에 따라 (-)인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예상하여 정관에 정해야 하며, 통상적으로는 탈퇴한 사업년도(회계년도) 종료 후 탈퇴자의 지분 가치를 계산하여 탈퇴한 다음연도에 해당 금원(출자금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가적

으로 조합원이 협동조합에서 임의로 탈퇴할 경우(특별한 사정 없이 탈퇴하는 경우) 출자금의 협동조합에 대한 지분 가치가 출자금을 초과하더라도 출자금 원금 만을 반환하도록 정관에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출자금의 협동조합에 대한 지분 가치가 출자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출자금 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자본충실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조합원 가입신청서에 출자금 반환을 금지한다는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되고, 출자금 반환 시점을 일정기간 늦추거나 분할지급하는 내용의 정관 규정이 있다면 이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27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 사례8

정관 상 임원수는 5명인데 총회에서 7명을 선출했습니다. 이 경우 7명 모두 임원신고/등기 해도 되나요?

정관 규정에 위반되는 임원선출을 하였으므로, 해당 임원선출 결의는 무효가 되며, 선출된 임원 7명 모두 그 권한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신고하고 등기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결국 협동조합은 임원을 선출 절차를 다시 거쳐서 5명을 선출해야 합니다.

#### 사례9

이사장A(자연인)과 이사B(법인)의 직무 수행자가 동일인이어도 되나요?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법인인 조합원이 임원이 될 수 있으나(34조 4항),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렇지 않습니다(92조에서 34조 4항 준용안함).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의 법인인 임원의 직무 수행자가 해당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한편 협동조합의 법인인 임원의 직무수행자는 법인인 임원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이 자가 개인적으로 협동조합의 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구별되므로, 결국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이 자는 어떤 안건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임원으로서, 그리고 협동조합의 법인인 임원의 직무수행자로서 서로 다른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습니다.

#### 사례10

조합 가입 시 100만원을 출자했는데 별도 출자증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조합에서 출자금의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므로 반환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100만원을 출자했다는 것이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한편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제1항 및 해당 협동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라 출자금반환 내지 지분반환 청구를 하시고, 만약 협동조합에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사례11

조합원이 탈퇴 시 본인의 지분을 조합에 전액(또는 일부) 기부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일반적으로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협동조합의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탈퇴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달리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탈퇴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12

일반협동조합 탈퇴 시 출자금은 회계연도 마감 후 3개월 내 반환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비 반환은 10일 내라고 하는데 일반협동조합 출자금과 다른 건가요?

민간임대협동조합 역시 「협동조합 기본법」에 바탕을 두고 설립된 조합입니다. 따라서 일반협동조합과 민간임대협동조합은 그 목적은 다르나 법적인 성격은 동일한 법인체입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탈퇴시에 조합에 대하여 행사하는 출자금반환 청구 내지 지분반환청구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탈퇴 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 연도의 다음 회계 연도부터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청구를 받은 협동조합이 반드시 3개월 내에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협동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한편 민간 임대 협동조합의 가입비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말하는 출자금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출자금과 경비를 합한 것인지 그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반환과 관련하여, 사례에서처럼 '탈퇴 후 10일 이내에 반환한다'고 하는 법률의 규정보다 조합원에게 유리한 정관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정관 내용이 협동조합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합니다.

### 사례13

#### 법인인 조합원이 폐업(해산)한 경우 출자금 반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이 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산된 법인은 청산사무가 종결될 때까지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한편 「협동조합 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5호는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협동조합에서 당연 탈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해산된 법인의 청산인은 협동조합에 대하여 출자금 반환 청구권(지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출자금(지분)을 반환받으면 해당 법인의 정관 및 법률 규정에 따라 청산 사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례14

####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나요?

민법상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으나 재단법인은 불가능합니다. 재단법인의 경우 그 성질상 의결 권한을 가지는 구성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된 재산을 그 존립 근거로 삼고 있으므로 협동조합의 형태를 갖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직변경 가능 법인의 상세 조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
근거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유한책임회사</li><li>주식회사</li><li>유한회사</li><li>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li><li>이하 '법인' 등으로 규정</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li><li>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li><li>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li><li>법인 등</li></ul>

### 사례15

#### 협동조합 해산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해산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여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동조합기본법에는 협동조합이 해산간주된 경우(법 제57조의 2)에 관하여 계속등기의 방법(제66조의 2)으로 협동조합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 협동조합이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총회의결로 인한 해산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를 유추해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협동조합이 해산신고 및 해산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기 전까지 청산인이 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다시 총회를 개최한 후 협동조합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것과 임원선출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계속등기를 마치면 협동조합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례16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일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설립신고 또는 설립인가 연월일은 '신고확인증' 또는 '인가증' 발급 받은 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례17

#### 조합원 외의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나요?

비조합원도 임원으로 선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정관작성 예시를 참고하셔서 "제47조(임원의 선임) 제1항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와 같이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18****사회적협동조합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은 신고제가 아니기 때문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재인가신청을 해야 하며, 이사장, 주사무소, 명칭 등 인가증상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가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관계부처(중앙행정기관)에 하시면 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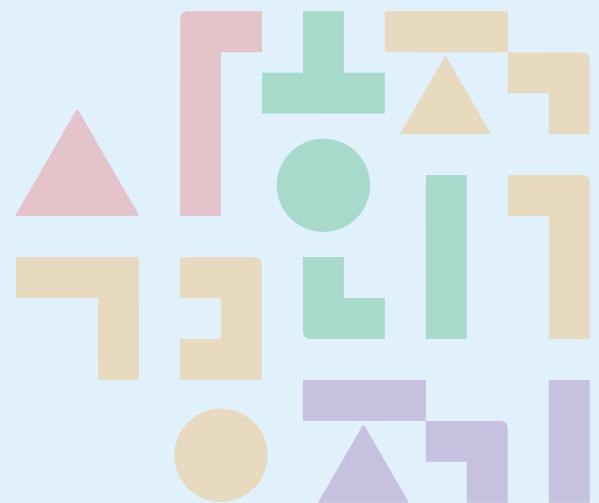
**사례19****임원이 연임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 변경등기를 해야하나요?**

연임이어도 등기하셔야 합니다. 연임은 중임과 동일한 용어이며 등기소에 중임등기 하시면 됩니다. 연임하는 경우 동일인이기 때문에 변경 사항은 없으나 결격사유 등의 확인을 위해 자치구에 변경신고 후 등기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사례20****설립신고 이후 등기하지 못했습니다. 해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설립신고확인증 발급 후 미등기 상태로 해산할 경우 해산총회를 열고 이사장이 청산인(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 가능)이 되어 해산을 의결합니다. 이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합니다. 청산인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해산신고를 하고, 해산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해산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후 별도의 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 사회적기업

## 사례1

## 개인사업자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나요?

사회적기업은 일정한 법인격 또는 그와 유사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설립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 개인으로 보며 사회적 기업에서 정한 조직형태가 아니므로 인증이 불가합니다.

## 사례2

##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 ①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가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조직형태를 갖춘 것
-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 ③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④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 ⑤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 ⑥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⑦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상 회사 합자조합 등)

## 사례3

## 사회적기업 인증 후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변경한다면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한 업종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업종변경 시마다 다시 인증을 받지 않으며 정관 상 사업을 추가한 뒤 신고하시면 됩니다.

## 사례4

## 사회적기업 유지가 어려워 인증을 반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인증의 취소) 제1항제4호에 따라 경영 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증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 인증서 반납 절차

## - 경영악화 등으로 사회적기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



## - 경영악화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



### 사회적기업이 인증서를 반납할 경우 사유별로 다음과 같이 조치

#### -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기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폐업사실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정구 ②현지 출장 및 불임 서식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업무 체크리스트'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③조사 결과 반납사유가 사실일 경우 신청서 수리 ④인증반납 사실을 본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 및 관보에 게재 ⑤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의 반납 사항을 통합사업 관리시스템 등 관련 정보데이터에 반영 관리

#### - 경영악화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

인증 반납 사유가 아님을 안내하고 신청서 반려, 다만 신청자가 반납을 고집하는 경우 청문 등 인증취소 절차 진행

### 사례5

###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뒤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인증의 취소)**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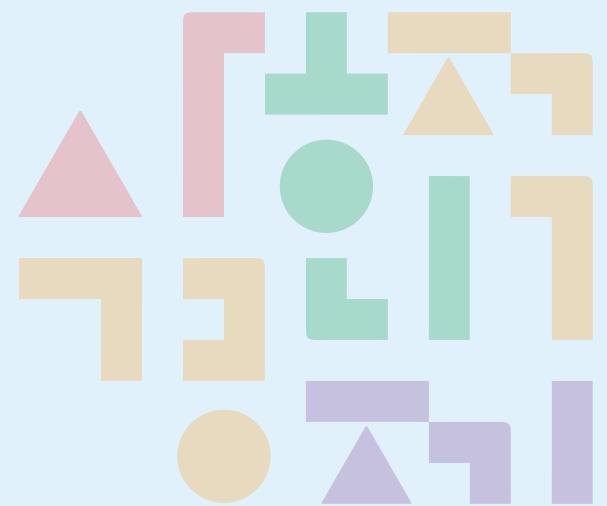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제12조의3(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인증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2. 인증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3. 인증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 · 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증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마을기업

## 사례1

## 예비 마을기업은 법인만 신청할 수 있나요?

마을 또는 단체(5인 이상 참여하는 비(非)법인 공동체) 등도 가능합니다. 다만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2개월 이내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사례2

##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도 마을기업이 될 수 있나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마을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을기업 지정 시에는 '지정요건'을 운영 시에는 '지정요건'과 '운영원칙'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읍/면/동)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 운영요건

- 1 마을기업은 지역 내에서 생산·소비 교환 분배가 이루어지는 지역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2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함(70% 이상 지역 주민 고용 권장)

## 지역의 범위(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 기준)

- '읍/면/동'을 기본으로 함(행정 동 기준, 분동될 경우 지정 시점의 범위 적용)
  - 설립 목적이나 주민 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8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단, '인구 감소 지역'은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21년 이전 마을기업이 지정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을기업을 유지·운영할 수 있으나 마을기업 심사 시에는 새로운 시행 지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 지역 주민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 등록 초본의 거주지, 재직 증명서의 직장 주소 등을 확인

## [기업성]

마을기업은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지정요건

- 1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조직이어야 함
- 2 마을기업의 사업은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있어야 함  
-차별화된 사업모델이나 관련 사업수행 실적, 인적·기술적 역량\* 등 마을기업 계획과 관련된 사업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의 경력·경험,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자격증 보유
- 3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광역자치단체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만 신청 가능 (단, 예비 마을기업으로 약정 체결한 후에 5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운영요건

- 1 마을기업은 지속 가능하여야 함  
-다음 연도 사업 운영이나 장기적인 사업확장을 위해 순이익의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2 마을기업 사업은 마을기업 대표 또는 이사들의 개인적인 영리활동과는 분리되는 별도의 사업이어야 함
- 3 2012년 이전에 비(非)법인으로 지정된 마을기업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법인으로 전환 후 보조금사업에 지원 가능)

##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 지정요건

- 1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이 동일해야 함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이 같아야 함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
- 2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회원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 3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4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 5 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균등)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은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혈제·자매

### 운영요건

- 1 마을기업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회원(출자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회원간 출자금 비율과 지역주민 비율 등을 마을기업 지정요건에 맞게 유지하여야 함
- 2 마을기업 운영과정에서 회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투명성 및 공정성, 정보와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공공성]

마을기업은 지역문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함

### 지정요건

- 1 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 설립·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2 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3 마을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
- 4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성이 있는 조직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권장
- 5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홍보에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할 수 없음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

### 운영요건

- 1 마을기업은 일자리의 질\* 및 고용의 형평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일자리의 질 : 근로자 임금수준 및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등  
\*\* 고용의 형평성 : 다양한 계층·연령·성별 등 마을기업의 설립목적 및 가치에 부합하는 고용형태 확대
- 2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활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지역사회 공헌활동은 사회적 환원 및 사업내용·계획과의 연계하여 진행해야 함

### 사례3

예비 마을기업에도 자체 우선구매 등과 같은 마을기업 지정 시 부여되는 혜택이 있나요?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 후에만 가능합니다.

### 사례4

마을기업 지정 후 주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 위치가 동일한 읍면동 내라면 변경 후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존 기초자치단체 관할구역을 벗어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마을기업은 '변경 신청서'를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군기초자치단체는 이전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주민 비율 등 마을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사례5

마을기업 지정 후 법인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 심사위원회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인 합병시에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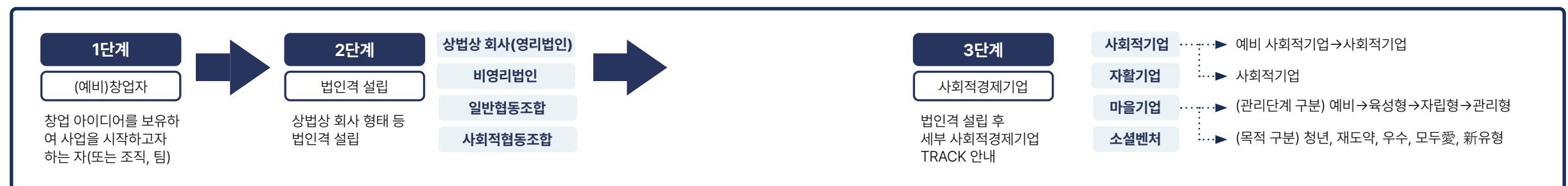
## 부록

지원제도	93
지원기관 소개	103
관련법 등	104



## 지원제도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제도 활용 로드맵



부처	사업명	세부조건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활성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외교부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사회적기업 등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자, 초기 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 패키지	예비창업자, 초기 창업자

- 사회적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 자활기업**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관리단계 구분) 예비→육성형→자립형→관리형
  - 소셜벤처** .....▶ (목적 구분) 청년, 재도약, 우수, 모두愛, 新유형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기업
-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마을기업**: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자활기업**: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조합이나 사업자 형태로 탈빈곤을 위하여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소셜벤처**: 혁신적인 기술과 지속가능한 사업모델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가치와 경제적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을 의미

## · 예비 사회적기업

부처	사업명	세부조건
외교부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규근로자 채용한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등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운영	사회적기업이 육성사업 출신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조성	사회적기업이 육성사업 출신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경제기업 정책자금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사회적경제기업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 보증사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 대출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투자펀드 조성 및 운영	(예비)사회적기업, 소셜벤처

## · 인증 사회적기업

부처	사업명	세부조건
외교부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운영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성장집중 지원	사회적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경제기업 정책자금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사회적경제기업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 보증사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 대출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투자펀드 조성 및 운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 협동조합

부처	사업명	세부조건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활성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고용노동부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운영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성장집중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정책자금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사회적경제기업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 보증사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 대출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금융위원회		

## · 사회적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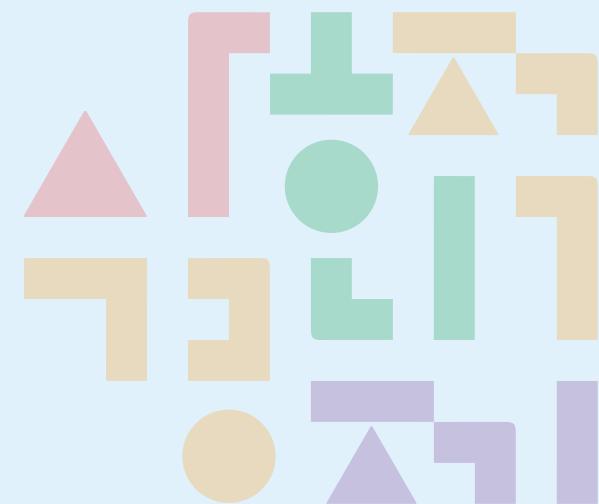
부처	사업명	세부조건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활성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과학기술 협동조합
교육부	학교 협동조합 활성화	학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등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운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등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조성	사회적기업이 육성사업 출신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성장집중지원	사회적경제기업
국토교통부	사회적경제기업 정책자금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사회적경제기업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 보증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 대출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투자펀드 조성 및 운영	(예비)사회적기업, 소셜벤처
금융위원회		

### · 소셜벤처기업

부처	사업명	세부조건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활성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사회적기업 성장집중지원	과학기술 협동조합 사회적경제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소셜벤처 육성 소셜임팩트 보증	소셜벤처기업, 소셜벤처 중간지원조직 등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에 따른 '사회성', '혁신성장성' 충족 기업

### · 공동지원사업 및 사회적경제기업(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부처	사업명	세부조건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마을기업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
환경부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예술기업 성장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등 예술분야 기업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기업 예비초기 창업지원 관광벤처 창업지원	스포츠분야 기업 관광분야 기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교육·문화·복지(농촌마을 배움나눔)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	5개시도(대전, 대구, 충남, 강원, 광주)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활성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지역아동센터(24개월 이상)
고용노동부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공공기관 프로그램 운영 대학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소셜벤처 육성	어촌지역 소재 조직(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소상공인 소셜벤처기업, 소셜벤처 중간지원조직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스마트자금 사회적기업 성장집중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정책자금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 보증사업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 대출지원 한국성장금융 사회투자펀드 조성 및 운영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산림청	산림형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	산림형기업 지역주민 참여공동체



## 지원제도

### 사회적경제기업 연차에 따른 지원제도 활용 로드맵

#### 세부 분류

##### · 사회적경제기업 연차 분류

연번	내용
1	1년 미만 창업(예정)자
2	기업설립 1년 이상 ~ 3년 미만
3	기업설립 3년 이상 ~ 7년 미만
4	기업설립 7년 이상

#####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분야 분류

사업분야	내용
육성	사회적경제 창업 및 육성지원, 인증 및 지정지원
공간	입주 공간지원, 리모델링, 집기제공 등
재정	사업개발비 지원(사업화 자금)
인재(교육·훈련·연구·기술)	기업가교육·역량강화, 연구개발, 기술지원(R&D)
컨설팅(멘토링)	전문가 컨설팅, 상시 멘토링
연계(네트워크·협업·지원)	네트워크 구축, 협업, 자원연계 등
판로	온·오프라인몰 입점, 우선구매 등
홍보(마케팅·공모전)	디자인, 브랜딩 및 홍보개선, 마케팅 등
인건비	인건비, 사회보험료 등
금융	융자, 투자, 보증지원 등

기업연혁 구분	1년 미만	설립 1년~3년	설립 3년~7년	설립 7년 이상	지원자격
사회적경제 주요사업	<p>[인재][홍보] 협동조합 활성화</p> <p>[연계] 학교협동조합 활성화</p> <p>[창업][인재][컨설팅]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페이지)</p> <p>[인재]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p> <p>[창업(육성)][판로][홍보] 마을기업 육성사업</p> <p>[재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p> <p>[창업][컨설팅(멘토링)][인재(기술)][연계(자원)] 예술기업 성장지원</p> <p>[인재(교육)] 스포츠산업 예비초기 창업지원</p> <p>[창업(육성)][컨설팅(멘토링)] 관광벤처창업 지원</p> <p>[인재(교육)][연계(네트워크)]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p> <p>[인재]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p> <p>[공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p> <p>[창업(육성)]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p> <p>[기타]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활성화</p> <p>[기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p> <p>[창업][홍보-공모전]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육성</p>	<p>[인재][홍보] 협동조합 활성화</p> <p>[연계] 학교협동조합 활성화</p> <p>[창업][인재][컨설팅]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페이지)</p> <p>[인재]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p> <p>[판로][연계]</p> <p>[창업(육성)][판로][홍보] 마을기업 육성사업</p> <p>[재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p> <p>[창업][컨설팅(멘토링)][인재(기술)][연계(자원)] 예술기업 성장지원</p> <p>[인재(교육)] 스포츠산업 예비초기 창업지원</p> <p>[창업(육성)][컨설팅(멘토링)] 관광벤처창업 지원</p> <p>[인재(교육)][연계(네트워크)]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p> <p>[인재]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p> <p>[창업(육성)]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p> <p>[기타]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활성화</p> <p>[기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p>	<p>[인재][홍보] 협동조합 활성화</p> <p>[연계] 학교협동조합 활성화</p> <p>[창업][인재][컨설팅]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페이지)</p> <p>[인재]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p> <p>[판로][연계]</p> <p>[창업(육성)][판로][홍보] 마을기업 육성사업</p> <p>[재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p> <p>[창업][컨설팅(멘토링)][인재(기술)][연계(자원)] 예술기업 성장지원</p> <p>[인재(교육)] 스포츠산업 예비초기 창업지원</p> <p>[창업(육성)][컨설팅(멘토링)] 관광벤처창업 지원</p> <p>[인재(교육)][연계(네트워크)]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p> <p>[인재]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p> <p>[창업(육성)]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p> <p>[기타]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활성화</p> <p>[기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p>	<p>[인재][홍보] 협동조합 활성화</p> <p>[연계] 학교협동조합 활성화</p> <p>[창업][인재][컨설팅]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페이지)</p> <p>[인재]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p> <p>[판로][연계]</p> <p>[창업(육성)][판로][홍보] 마을기업 육성사업</p> <p>[재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p> <p>[창업][컨설팅(멘토링)][인재(기술)][연계(자원)] 예술기업 성장지원</p> <p>[인재(교육)] 스포츠산업 예비초기 창업지원</p> <p>[창업(육성)][컨설팅(멘토링)] 관광벤처창업 지원</p> <p>[인재(교육)][연계(네트워크)]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p> <p>[인재]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p> <p>[창업(육성)]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p> <p>[기타]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활성화</p> <p>[기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li> <li>· 학교 협동조합</li> <li>· 과학기술인협동조합</li> <li>·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사회적기업</li> <li>· 기초자자체</li> <li>· 마을기업</li> <li>·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li> <li>· 예술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li> <li>· 스포츠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li> <li>· 관광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li> <li>· 사회적농업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법인 또는 단체)</li> <li>· 읍·면단위 주민 공동체</li> <li>· 5개 시도(대전, 대구, 충남, 강원, 광주)</li> <li>· 자활기업</li> <li>· 발달장애인</li> <li>· 지역아동센터(24개월 이상)</li> <li>· 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등</li> </ul>

기업연혁 구분	1년 미만	설립 1년~3년	설립 3년~7년	설립 7년 이상	지원자격
사회적경제 주요사업	[인건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인건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 근로자 채용한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li> <li>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li> </ul>
	[재정][인재-기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등</li> <li>(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등</li> </ul>
	[판로]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기업, 공공기관</li> </ul>
	[판로][기타]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비)창업자, 초기 창업자</li> </ul>
	[창업(육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출신 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 초기창업기업</li> </ul>
	[공간][인재-교육]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그램 운영 대학</li> </ul>
	[기타]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예비 창업자 등</li> </ul>
	[컨설팅(멘토링)][인재-기술][홍보-마케팅] 여성가족형 예비 사회적기업 활성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li> </ul>
	[인재-교육][컨설팅][홍보-마케팅]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정 어항(국가어항 제외)과 소규모 항·포구 및 그 배후어촌</li> </ul>
	[재정][연계-네트워크][인재-교육] 어촌뉴딜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경제기업(업력 4년~10년차)</li> </ul>
	[컨설팅][인재][판로]		사회적경제 성장집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비)소상공인 협동조합</li> </ul>
	[재정][판로][인재][컨설팅]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소상공인</li> </ul>
	[인재][컨설팅][재정]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셜벤처기업, 소셜벤처 중간지원조직 등</li> </ul>
	[인재-연구][연계-자원][창업(육성)] 소셜벤처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에 따른 사회성, 혁신성장성' 충족 기업</li> </ul>
	[금융-보증] 소셜임팩트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경제기업</li> </ul>
	[금융-투자,융자] 사회적경제기업 정책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상공인 협동조합 및 소상공인</li> </ul>
	[금융] 소상공인 스마트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경제기업</li> </ul>
	[금융-보증]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비 창업자</li> </ul>
	[창업(육성)] 예비창업 패키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li> </ul>
	[금융-보증]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 보증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li> </ul>
	[금융-융자]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 대출지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비)사회적기업, 소셜벤처</li> </ul>
	[금융-투자] 사회투자펀드 조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산림형 기업</li> </ul>
	[창업][인재-교육][컨설팅(멘토링)] 산림형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주민 참여공동체</li> </ul>
	[기타]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				

\*출처: 2023년 사회적경제 주요사업 안내(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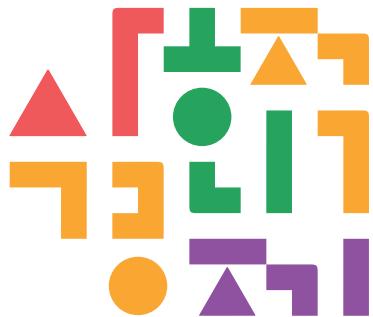
\*지원사업은 정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자체 사회적경제 담당부서

지자체	부서명	연락처
서울	공정경제담당관 상생기반조성팀	02-2133-5485
부산	디지털경제혁신실 경제정책과	051-888-4762
대구	경제국 창업진흥과	053-803-6471
인천	경제산업본부 사회적경제과	032-440-4912
광주	경제창업실 일자리정책과	062-613-3831
대전	경제과학국 일자리경제과	042-270-4581
울산	경제국 기업지원과	052-229-2872
세종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044-300-4831
경기	사회적경제국 사회적경제육성과	031-8008-3588
강원	경제국 사회적경제과	033-249-2779
충북	경제통상국 소상공인정책과	043-220-2572
충남	산업경제실 경제정책과	041-635-3321
전북	기업유치지원실 금융사회적경제과	063-280-3781
전남	일자리경제본부 사회적경제과	061-286-5021
경북	경제산업국 사회적경제민생과	054-880-2612
경남	경제기업국 사회적경제과	055-211-3453
제주	일자리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054-710-2552

## 사회적경제 관련법

관련법	QR코드
협동조합 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발 행 일** 2024년 12월

**발행기관** 미담장학회·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탁기관)

**주 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23길 10, 5층

**문 의 처** 02-353-3553

**홈페이지** [www.sehub.net](http://www.sehub.net)

**디 자 인** 디아앤코 주식회사

#### 참고자료

2024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2024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2023 협동조합 업무지침(기획재정부)

2023 사회적경제 주요사업 안내(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2 협동조합 등 총회 개최 및 운영 관련 주요 질의사항 안내(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 상담사례로 배워보는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 등

\* 이 책자의 내용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책자의 내용과 활용에 관한 문의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주시기 바랍니다.